

인도네시아 여행자의 주류 반입 규정 안내

2025.05.20.(화), 주인도네시아대사관

□ 관련 규정

- 재무부장관령 203/PMK.04/2017 (승객 및 승무원이 반입하는 개인물품의 수입에 관한 규정)

□ 주요 내용

- (원칙) 만 18세 이상의 성인 승객은 인도네시아 입국시 최대 1리터의 주류를 수입세 등 세금없이 반입 가능
- (한도초과 주류 반입) 반입 불가
 - 현행 규정에 따르면, 여행객의 수입세 등 세금 납부의사와 무관하게 1리터를 초과하는 주류는 반입할 수 없음
 - 반입한도를 초과한 주류의 경우 공항이나 항만의 세관당국에 의해 폐기
- (여행자 휴대품 예치) 불가
 - 주류의 경우 휴대품 예치*대상이 아님. 예를들어 주류 2리터 구매 후 인도네시아 입국 시 1리터를 예치하는 등의 행위는 불가능
 - * (예치) 통관할 의사가 없는 물품을 세관에 일시 보관하였다가 출국할 때 찾아가는 제도
- (기타 유의사항) 인니에서 출국시 여행객이 휴대한 주류의 기내반입 여부는 국제선의 액체류 기내 반입 기준에 따름에 유의
 - 여행객이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주류를 인니에서 소비하지 않고 출국시 기내반입 휴대수화물로 다시 가지고 나가려고 하다가 인니 공항에서 압류·폐기되는 사례 있음